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49
----------	------

발의연월일 : 2017. 6. 28.

발의자 : 임종성 · 안호영 · 김경협  
김철민 · 윤관석 · 김성수  
김병욱 · 소병훈 · 이찬열  
강훈식 · 전현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40% 이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30% 이내에서 각각 50% 이내로 완화하는 취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법률 제1471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 예정)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주주 1인의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50%의 1인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 주식소유제한을 원래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제3항).

또한, 일반국민들이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시장 상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장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도록 명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상장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법률 제 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장을 명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의2제3항 중 “제14조의8”을 “제14조의8,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p> <p>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p> <p>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 사에 대하여는 <u>제14조의8</u>, 제24 조제1항 · 제2항 및 제25조제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 ⑥ (생 략)</p>	<p>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상장을 명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14조의8, 제15</u> <u>조-----</u>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